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3
------	-----

2022. 12. 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10월 17일, 이효원 의원(찬성자 21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2.12.20.)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효원 의원)

1. 제안이유

-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박물관 운영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1조 제1항).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이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21명 이내의 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어 이를 일치시키고자 발의되었음.

나. 박물관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안 제11조제1항)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됨.
- 그러나 현행 조례 제11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법 시행령과 일치하지 않은 실정임.

< 6개 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 현황 >

기관명	위원회 구성 현황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위원 임기: 2021. 3. 4. ~ 2023. 3. 3.(2년) ·위원 구성: 총 20명(위촉직 19, 당연직 1)
한성백제박물관	·위원 임기: 2022. 11. 1. ~ 2024. 10. 31.(2년) ·위원 구성: 총 13명(위촉직 12, 당연직 1)
서울공예박물관	·위원 임기: 2022. 11.14. ~ 2024. 11. 13.(2년) ·위원 구성: 총 13명(위촉직 12, 당연직 1)

*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은 조례안 개정이 완료된 후 운영위원회 구성 예정

- 서울특별시는 조례 별표에 명시된 6개 박물관¹⁾의 위원회 구성인원을 살펴보면 서울역사박물관은 20명,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을 제외한 한성백제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의 운영위원회는 위원 수는 13명임.
- 서울역사박물관은 2002년 3월 「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 제정 당시 위원회 위원 수는 15인 이내였으나, 2010년 7월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21인 이내로 규정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
-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을 15인에서 21인으로 변경할 당시에는 자문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자문위원의 증원을 시행하였으나, 회의 참석수당 등 예산 지출 요인도 증가하는 등, 필요 이상의 과도한 위원 구성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현재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관장) 1인에 19명의 위촉직 위원을 더하여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음.
- 운영위원회는 서울역사박물관의 주요업무와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유물 공개구입 및 유상기증 대상유물을 최종 심의하여 결정하는 기구로서 2021.3.4. 제10대 운영위원회 출범 이후 8번의 활동(서면 개최 포함)을 통해 총 579건의 유물을 심의하였음.

1)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 서울역사박물관 제10대 운영위원회 활동 내역 >

연도	개최일	회의 안건	참석인원
2021	03.09.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코로나19 방역으로 서면 개최)	20명
	06.10.	·제1차 유물공개구입 대상유물 최종심의(192건)	14명
	11.11.	·제2차 유물공개구입 대상유물 최종심의(34건) ·박물관 현안 보고(상설전시 개편 등)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11명
	12.08.	·2021년도 유상기증 사례비 지급 대상 유물 최종심의(250건)	19명
2022	02.21.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코로나19로 서면 개최)	20명
	05.20.	·제1차 유물공개구입 대상유물 최종심의(49건)	11명
	10.13.	·제2차 유물공개구입 대상유물 최종심의(54건)	12명
	11.07.	·현장자문(망우동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현장 자문회의)	9명

- 그동안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활동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서면으로 진행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제외하면 20명 위원이 모두 참석한 회의는 전무하고, 대부분의 회의가 14명에서 11명 내외에서 이루어진바, 관련법 시행령을 적용하더라도 운영위원회 운영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은 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한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일관성·정합성 유지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 -----10명 이상 15명----- ----- -----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운영 근거** :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5조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촉직 위원 : 박물관 관련 식견·경험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
 - 당연직 위원 : 서울역사박물관장
- 위원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연임 6년 초과 금지)
- 위원회 기능 : 박물관의 전시, 연구, 자료수집, 교육, 기본시설 대관 등 박물관 운영에 관해 심의 및 자문

□ **제10대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 위원 구성 : 총 20명(위촉직 19, 당연직 1)
 - 위원장 : 유흥준(남,명지대 석좌교수), 부위원장:양보경(여,성신여대 명예교수)
 - ▶ 분야별(19): 역사3,미술사4,건축도시사3,지리학3,고고학1,한문학문화유산2,(대중)문화2,시의회1
 - √ 시의원 보궐위원 위촉('22.8.25.) : 이효원 의원(여, 33세)
- 위원 임기 : 2021.3.4. ~ 2023.3.3.(2년)
- 회의 개최 : ('22년)총 3회('21년:4회, '20년:3회)
 - 박물관 주요업무 보고, 공개구입 대상유물 및 유상기증 대상유물 최종심의 등

【역대 위원회별 운영 실적】

역 대 별	제8대(16명/'17.3.3~'19.3.2)		제9대(20명/'19.3.4~'21.3.3)		제10대(20명/'21.3.4~'23.3.3)	
연 도 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10월
개최 횟수	4회	4회	3회	3회	4회	3회

□ **향후계획**

- 제10대 위원회 임기 만료 도래에 따른 제11대 위원회 구성 준비: '22.11월~
- 위촉직 위원 구성을 위한 후보자 선임, 명부 작성(분야별, 성별 균형 선정)
- 제11대 위원회 위원 구성 확정 및 위촉: '23.1월

< 총 위촉기간 구분에 따른 위원 현황 >

총 위촉기간	연임 6년 ('17. 3. 3. ~ '23. 3. 3.)	연임 4년 ('19. 3. 4. ~ '23. 3. 3.)	2년 이하 ('21. 3. 4. ~)
위원 수	11명	7명	2명
비 고	유홍준 위원장 외		시의원, 관장

< 위원회 위원 구성 선정 기준 >

- **근 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 **중복 위촉 제한** :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불가
- ✓ **장기 연임 제한** : 같은 위원회에 연임 6년 초과 금지 (연임 2회까지 가능)
- ✓ **성별 비율** :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의 위원 60% 초과 금지
- ✓ **청년 비율** : 위촉직 위원 중 10% 이상 <신설 2022.3.10>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7명, 참석위원 전원 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효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3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10월 17일

발 의 자: 이효원 의원(1명)

찬 성 자: 경기문, 김경훈, 김규남, 김용일, 김원중, 김원태, 김형재, 남창진, 박철성, 서상열, 서준오, 송경택, 이영실, 이종태, 임만균, 장태용, 최민규, 최윤희, 허·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21명)

1. 제안이유

-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박물관 운영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 11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1인”을 “10명 이상 15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u>21인</u>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 원으로 한다.</p> <p>1. ~ 4. (생 략) ② · ③ (생 략)</p>	<p>제11조(위원회 구성) ① ----- ----- <u>10명 이</u> <u>상 15명</u>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p>